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02

발의연월일: 2024. 7. 5.

발 의 자:위성곤・박지원・한정애

서영교・허 영・주철현

진성준 • 박희승 • 문대림

이소영 · 강유정 · 김한규

정진욱 • 유건영 • 오세희

조인철 • 박수현 • 양부남

박지혜 · 김성환 · 임미애

위성락 • 민형배 • 박정현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거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등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, 수열에너지 등 신·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관련 사 업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. 이에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·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6항).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6항 중 "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"를 "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 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아니하고,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
 - 가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 각수로 사용하는 경우
 - 나. 하천수를 수열에너지(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말한다)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청 케	7l) 7l Al.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물이용부담금의 부과・징	제19조(물이용부담금의 부과・징
수) ① ~ ⑤ (생 략)	수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	6
의 <u>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</u>	<u>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</u>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	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이
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	용부담금을 면제한다.
<u><신 설></u>	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
	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
	수를 사용하는 경우
<u><신 설></u>	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	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
	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
	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「물
	환경보전법」 제2조제7호에
	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
	함되지 아니하고, 취수된 하
	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
	에 변동이 없는 경우
	가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4
	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
	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
	<u>는 경우</u>
	나. 하천수를 수열에너지(물

	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
	는 에너지를 말한다)의 생
	산에 사용하는 경우
⑦ ~ ⑪ (생 략)	⑦ ~ ① (현행과 같음)